



보도 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	배포 일시	2023. 3. 6.(월) 09:00
담당 부서	심사국 세원심사과	책임자	과장 윤동주 (042-481-7870)
		담당자	사무관 전익표 (042-481-7871)

## 수출 중소기업, 관세 부담 덜고 경영에 전념하세요!

- 관세조사 유예,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프로그램 시행 -

- 관세청(청장 윤태식)은 수출 증진과 중소기업의 경영 활력 제고를 위해 3월 6일(월)부터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.
  - 지난해 관세청은 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재해 피해기업과 혁신·일자리창출 기업 등 정책지원 기업을 중심으로 총 7,403개 업체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,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.
- 올해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수혜기업 1만개를 목표로 납부예정 관세의 담보제공 전액 면제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.
  - **[지원대상]** 기업의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수출·혁신·일자리창출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한다.
    - ① (수출지원) 세정지원 대상에 ▲수출우수기업\*, ▲수출의 탑 수상 기업 및 ▲직·간접수출\*\* 제조기업을 신규 추가하고,
      - \*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(AEO) 또는 수출제조기업이, 매출대비 수출비중 30%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
      - \*\* 간접수출 : 수출물품의 원재료나 완제품을 제조하여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거래
    - 이 중 ‘수출우수기업’에 대해서는 관세청의 지원 혜택뿐만 아니라, 국세청의 세무조사 유예, 납기연장 등 내국세 분야 세정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.
    - ② (정책지원) 혁신기업(중기부), 일자리창출(고용부) 등 범정부 정책지원을 위한 기존 세정지원 대상에, 모범납세자(국세청), 탄소중립 전략기업(산업부)을 추가한다.
    - ③ (위기극복 지원) 국제공급망 위기, 태풍·지진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 기업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.

**< 2023 관세청 세정지원 대상 중소기업 > [상세 붙임1 참고]**

구 분	대 상
수출지원	▪ 수출우수기업
	▪ 수출의 탑 수상 기업
	▪ 직 · 간접수출 제조기업
정책지원	▪ 혁신기업, 탄소중립 추진 전략기업, 뿌리기술 보유기업
	▪ 일자리창출 · 유지기업, 일자리옴므기업
	▪ '22년 신설 기업, 벤처기업 육성 인증기업
	▪ 관세청 · 국세청 모범납세자
위기극복 지원	▪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, 물류대란, 긴급재난 피해기업
	▪ 장애인 표준사업장, 장애인 고용율 3%이상 기업
	▪ 산업위기지역,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

※ 선정기준 : 관세청 선정 + 관계기관(국세청, 중기부, 고용부, 산업부 등) 인증 기업

○ [지원내용] ①관세조사의 유예 ②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기한 연장, 분할납부 ③담보생략 ④수출환급금 신속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.

- ① (관세조사 유예) 수입실적 1억 달러 미만('22년 기준)인 기업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1년 간('23.7.1~'24.6.30.) 관세조사를 유예한다.
- ② (납부기한 연장 등)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▲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, ▲최대 1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.
- ③ (담보생략) 납기연장 등 승인 업체에 대해, 납부예정 관세의 담보제공을 전액 면제하여(기존 50% 면제)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도 지원한다.
- ④ (수출 환급금 지급) ▲신생 수출기업 등 관세환급 제도 이용이 미진한 중소기업 대상 환급금 찾기 서비스, ▲기업의 수출신고 시 환급정보 실시간 자동 안내, ▲환급 신청 시 당일 환급을 실시한다.

**< 2023 관세청 세정지원 주요 내용 >**

분 야	원 칙	지 원
① 관세조사 유예	▪ 정기 관세조사 수행	▪ 관세조사 유예(1년)
②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허용	▪ 신고수리일~15일 이내 관세납부	▪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 연장 ▪ 최대 1년범위 내 분납 허용
③ 담보제공 생략	▪ 수입신고 시 납세담보 제공	▪ 납기연장(분납)업체 담보 생략
④ 환급금 신속 지급	▪ 환급신청 시 심사 후 환급 처리	▪ 당일 지급(선지급 후심사)

- 납부기한 연장, 수출 환급금 지급 등에 대한 세정지원 대상 해당여부, 신청절차 등은 가까운 세관(붙임2)에 연락하여 문의하면 된다.
- 윤동주 세원심사과장은 “금년도 관세분야 세정지원은 중소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에 목표를 두고 최대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정책을 펼쳐나갈 계획”이라고 말했다.

**붙임 1. 2023년 관세청 세정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준(상세)**

**2. 세관별 상담 창구**

상 세 내 역		확인기관	
수출 · 혁신 · 일자리 창출	① 수출기업	① 수출우수기업 •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(AEO)이거나 수출용원재료 관세 환급실적 있는 기업 중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30%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	관세청
		② 수출의 탑 수상 기업 • ‘수출의 탑’ 수상 중소기업	무역협회
		③ 수출 제조기업 •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해당 제조기업으로 직 · 간접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	관세청
	② 혁신기업	① 혁신기업 •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, 제15조3 의거 기술혁신형(메인비즈), 경영혁신형(이노비즈)지정 기업	중기부
		② 탄소중립 추진 전략기업(RE100) • 「산업부 고시」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규정	산업부
		③ 뿌리기술 전문기업 • 「산업부 고시」 2018-122호 의거 핵심뿌리기술 보유 기업	산업부
	③ 일자리창출 및 유지기업	① 일자리 창출 기업 • 수입규모별 일자리 창출 비율* 이상 채용 기업 * (관세청) '22년 수입액 기준 : 1천만불미만 1%이상, 5천만불이하 2%이상, 1억불 이하 3%이상 * (국세청)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 목적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제출한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상 중소기업	관세청 국세청
		② 일자리 유지 기업 • 일자리 유지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	관세청
		③ 일자리 으뜸 선정 기업(중소기업) • 「고용노동부」 선정 일자리 창출 으뜸기업	고용노동부
		④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• 「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」 제16조의2 의거 인증 기업	국가보훈처
④ 스타트업	① '22년 신설 기업 • '22년 신설 중소기업(분할 · 합병 · 인수 등은 제외)	관세청	
	② 새싹기업 • 「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」 제2조의2 해당 기업	중기부	
⑤ 성실인증	① 관세청 ·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기업	관세청, 국세청	
위 기 극 복	⑥ 피해기업	① 러시아 · 우크라이나 전쟁, 물류대란, 긴급재난 등 피해기업 • 세관장이 피해사실 확인 및 인정 기업	관세청
	⑦ 사회적 기업	① 장애인표준사업장, 장애인고용률 3%이상 기업 • 최근2년 누적 수입실적 1억불이하 +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해당 기업	관세청, 고용노동부
	⑧ 위기산업 재난지역 기업	① 개성공단 입주기업 ②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소재 기업 ③ 기타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	통일부 산업부 행안부

## 붙임2

## 세관별 상담 창구

세관	납기연장 · 분할납부		환급 지원	
	부서명	전화번호	부서명	전화번호
<b>인천본부</b>	<b>심사정보1과</b>	<b>032-452-3049</b>	<b>심사정보1과</b>	<b>032-452-3325</b>
김포공항	조사심사과	02-6930-4942	조사심사과	02-6930-4942
국제우편	우편통관과	032-720-7421	우편통관과	032-720-7421
수원	조사심사과	031-547-3977	조사심사과	031-547-3962
안산	"	031-8085-3823	"	031-8085-3831
<b>서울본부</b>	<b>심사정보과</b>	<b>02-510-1312</b>	<b>환급심사과</b>	<b>02-510-1362</b>
안양	조사심사과	031-596-2022	조사심사과	031-596-2024
천안	"	041-640-2324	"	041-640-2329
청주	"	043-717-5733	"	043-717-5733
대전	"	042-717-2258	"	042-717-2264
속초	"	033-820-2147	"	033-820-2147
동해	-	033-539-2671	-	033-539-2672
성남	-	031-697-2589	-	031-697-2582
파주	-	031-934-2816	-	031-934-2805
<b>부산본부</b>	<b>심사정보과</b>	<b>051-620-6378</b>	<b>심사정보과</b>	<b>051-620-6387</b>
김해공항	조사심사과	051-899-7264	조사심사과	051-899-7264
용당	"	051-793-7124	"	051-793-7124
양산	"	055-783-7328	"	055-783-7325
창원	"	055-210-7635	"	055-210-7632
마산	"	055-981-7034	"	055-981-7035
경남남부	"	055-639-7534	"	055-639-7534
경남서부	-	055-750-7912	-	055-750-7909
<b>대구본부</b>	<b>납세지원과</b>	<b>053-230-5314</b>	<b>납세지원과</b>	<b>053-230-5312</b>
울산	조사심사과	052-278-2265	조사심사과	052-278-2265
구미	"	054-469-5639	"	054-469-5632
포항	"	054-720-5714	"	054-720-5732
<b>광주본부</b>	<b>심사과</b>	<b>062-975-8064</b>	<b>심사과</b>	<b>062-975-8063</b>
광양	조사심사과	061-797-8433	조사심사과	061-797-8433
목포	"	061-460-8544	"	061-460-8542
여수	"	061-660-8673	"	061-660-8673
군산	"	063-730-8751	"	063-730-8745
제주	"	064-797-8852	"	064-797-8893
전주	-	063-710-8975	-	063-710-8974
<b>평택직할</b>	<b>심사과</b>	<b>031-8054-7185</b>	<b>심사과</b>	<b>031-8054-7185</b>